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Research on Gender Equality of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엄 해 옥**

Yan, Hai-Yu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한국국적법에서의 남녀불평등 |
| II. 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 | IV. 나가는 말 |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협약과 선언들에 여성차별철폐가 제기되면서 여성들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중시를 받기 시작했으나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때 여성들의 법적지위에는 차이가 보였다. 이 글은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의 제정과 실시 그리고 개정에서 보여진 남녀평등에 대한 회고와 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겠다.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조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

투고일 : 2015. 12. 15. / 심사회의일 : 2016. 1. 26. / 게재확정일 : 2016. 2. 12.

* 본 논문은 吉林省教育廳“125”社會科學研究프로젝트(吉教科文合字[2014]第6号), 吉林省社會科學重點領域(朝鮮韓國法)研究基地, 吉林省高校創新團隊(朝鮮韓國法研究)발전기획의 지원으로 완성되었음.

** 중국 연변대학법학원 부교수

Professor, School of Law, Yanbian University, China

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법의 제정과 개정진척이 빨랐던 한국에서 북한과는 달리 거의 반세기동안 부계혈통주의를 취하여 남녀불평등을 실시해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다시 돌이켜 볼 때 일관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1997년에 개정된 한국국적법에 헌법의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정이라는 평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국적법, 북한국적법, 부계혈통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남녀평등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천부인권의 주체로서 모두 평등권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많은 선언과 협약들에서는 여성들의 인권보장이 주장되었으나 법상 남녀평등은 쉽게 이루어지 못하였다. 바로 지난세기에 제정되고 실시, 개정된 남북한국적법에서 그 차별이 알려진다.

동아시아는 유교라는 거대한 사상체계의 지배를 받아 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에 제한과 침해를 주었다. 유교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족(纏足)¹⁾ 문화는 천 여년 동안 중국여성들을 속박해 왔고 공자의 유교사상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840년에 있는 중국과 영국과의 “아편전쟁²⁾” 그리고 1853년에 있는 일본과 미국과의 “흑선사건”을 계기로 중국에는 양무운동(1861-1895년)이 있었고 일본에는 메이지유신(1860-1880년)이 있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한반도에 향하여 “운양호 사건”을 만들어냈고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갑신정변(1884년 12월 4일-7일)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서방의 선진기술과 교육 등이 원활하게 유입되면서 동아시아는 점차 근대화에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방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졌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양분되어 한반도의 3.8선 이남에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으로 약칭)이, 3.8선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약칭)이 집정하게 되었다. 한

1) 전족의 기원을 5대의 남당(南唐, 937-975)이라 한다면 전족은 천년 남짓한 동안 중국여성들을 속박해 왔다. (彭华, “中国缠足史考辨”, 江苏科技大学学报, 2013.3, 8쪽)

2)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 중·영전쟁의 발미가 된 것은 아편문제였으므로 이 전쟁을 아편전쟁이라고 한다. 아편전쟁은 제1차 전쟁(1839-1842)과 제2차 전쟁(1856-1860)으로 나뉜다.

국에서 이승만정권이 민군정의 도움과 일본법의 영향으로 법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한다면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주요하게 구소련과 중국법의 영향으로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단의 역사에서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서 다 같이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북한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상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오다가 1997년에 이르러 개정이 있었다.

1997년에 있는 한국국적법개정에 대한 한국법무부의 해설에는 “절대다수국가가 부모양계혈통주의일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부계혈통주의 국가들도 80년대 이후 대부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중국 및 북한조차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되어 있었다.”³⁾는 내용이 있다. 본 해설 중 “중국 및 북한조차도”와의 표현과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유럽에 위치한 소련은 1931년에 제정한 국적법(제7조)에서, 헝가리는 1957년에 제정한 국적법(제1조 제1항)에서 다 같이 부모 중 일방이 본국국민이라면 자녀는 출생 시 무조건 원시적으로 본국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였다.⁴⁾ 다음, 아시아에 위치한 북한에서는 1946년 7월 30일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함께, 중국에서는 1947년에 제정된 “중국토지법대강”과 함께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오히려 지난세기 중기에 제정되고 실시된 한국국적법은 반세기 가깝게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1979년 12월 18일, UN의 제36기 대회에서 통과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여성선언”으로 되어 20여개 국가의 서명과 비준을 거친 후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⁵⁾ 한국국적법은涉外혼인으로 생기는 이중국적을 방지하고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었지만 남계혈통을 중시하는 부계혈통주의는 여성들의 국적권에 제한을 주고 남녀평등을 위반한 탓으로 한국헌법의 평등권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위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반대로 북한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됨이 없이, 위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해설, 2007, 41쪽.

4) 李浩培, 李浩培文献, 法律出版社, 2000, 713쪽.

5) 高放, “世界妇女解放运动的特点和规律”, 社会科学研究, 2005.2, 19쪽.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고 자국민 혹은 자국민의 여부를 결정하는 법은 국적법으로서 국적법은 주요하게 국적의 취득과 상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민 혹은 공민의 국적권은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어 법적 인 보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건국과 함께 당의 정책이 법통을 대체하였다는 설명을 앞세우면서,⁶⁾ 지난세기에 제정되고 실시와 개정을 거친 남북한국적정책 특히는 남북한국적법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

1. 사회주의중국의 영향

1.1 중국여성해방의 연역

유교사상의 핵심은 3강7) 5륜8)으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3가지 강령과 5가지 도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부위부강(夫爲婦綱,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과 부부유별(夫婦有別, 남편과 아내는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자9)의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수 천년동안 중국여성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여성들은 차별을 받아왔고 그 차별은 교리의 곳곳에 존재했다. 중국에서 남녀평등사상의 시초는 태평천국운동이라 전해지고 있고 여권사상은 양무운동과 무술유신, 신해혁명과 5·4운동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에는 큰 발전을 가져왔다.

태평천국운동(1851-1864년)은 홍수전(洪秀全)이 이끈 농민운동으로서 중국근대사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반청운동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태평천국운동에서 맨 처음으로 남녀평등의 맹아가 보였다¹⁰⁾고 전해지고 있고 여권(女權)사상의 수용은 양무운동¹¹⁾(1861-

6) 1957년 “반우파운동”후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점차 법률을 대체하게 되었다.(易继明, “中国法学教育的三大转型”, 环球法律评论, 2011.3, 36쪽.)

7) 夫爲婦綱, 父爲子綱, 君爲臣綱.

8) 夫婦有別, 父子有親, 君臣有義, 長幼有序, 朋友有信.

9) 공자(공원전 551 - 공원전 479년)는 중국의 춘추말기의 사상가이고 교육가이며 정치가로서 유교사상의 창시자이다.

10) 첫째,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에서 제출된 “분전불론남부(分田不論男婦)”였으며 둘째, 전족의 철폐와 여성들을 전쟁 및 생산노동에 참여시킨 것, 매매혼인에 대한 금지였다. (徐維群, “太平天国婦女政策与客家妇

1895년)시기부터라 전해지고 있으며 서양의 선진기술과 교육 및 자유와 평등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한 양무운동이 실패한 후 1898년에 발발한 무술유신¹²⁾에서 여권운동은 이중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여성학에 대한 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전족에 대한 금지¹³⁾라 전해지고 있다.

1911년에 손문(孫文)이 이끈 자산계급민주혁명인 신해혁명에서 중국여성들은 여성인권신장에 대하여 크게 동조하였다. 이어 1919년에 발생한 5·4운동으로 여권신장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어졌고 1917년에 발발했던 소련의 10월 혁명은 중국에 마르크스주의를 전파하여 중국여성들의 사상을 해방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성해방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¹⁴⁾ 중국에서 모택동의 남녀평등사상은 1910년대에 일어난 신문화운동¹⁵⁾부터라 전해지고 있다.¹⁶⁾ 여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발전됨에 따라 전족은 폐지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여성해방운동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919년부터 1949년까지 있었던 중국신민주주의혁명에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있었는데 중국공산당의 혁명근거지였던 연안에는 항일에 나선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¹⁷⁾ 1939년 7월 20일, 모택동의 창도에 연안에 여자대학이 설립되었고 신중국이 성립된 후 당 공작의 일부분으로 된 여성공작은 해방구로부터 전국에 전파되었다.¹⁸⁾ 그래서 국적권을 포함하

女”, 龙岩师专学报, 1995.6, 55-56쪽 참조)

- 11) 양무운동의 핵심인사 강유위의 사상을 보자면 첫째는 전족악습을 없애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보민(保民)”, “정속(正俗)”의 주요내용으로 하였고 둘째는 혼인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했으며, 셋째는 교육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였고 넷째는 여학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杨威, “戊戌变法时期的女子教育”, 西江大学学报, 1997.1, 17쪽 참고.)
- 12) 무술유신은 광서황제의 지지를 얻은 유신파들이 일으킨 혁신운동으로서 무술변법, 백일변법(6.11.~9.21.까지), 유신변법이라고도 한다.
- 13) 姜昱子, “辛亥革命前夕的女权思潮”, 学术交流, 2009.5, 184쪽 참조.
- 14) 于彦君, “浅析‘五四’运动时期的中国妇女解放运动”, 改革与开放, 2009.7, 15쪽.
- 15) 봉건적인 제도와 문화를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 16) 호남신문화운동의 주도자였던 모택동은 “조오정(趙五貞) 사건”(1919.11.14.에 매파의 소개로 부모가 정해진 계실(繼室)혼인에 죽음으로 반항한 사실)이 발발한 이후 “대공보”와 같은 언론들에 여성문제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제기하면서 최초로 되는 여성해방사상을 확립하였다. (丁芮, “从‘赵五贞’事件看毛泽东的早期妇女解放思想”, 湖南第一师范学报, 2007.6, 12쪽 참조.)
- 17) 연안은 중국섬서성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공농홍군의 주력부대가 국민당의 포위토벌을 피해 진행한 2만5천리장정의 종점으로서 1935년부터 1948년까지 중국공산당의 근거지였는데 연안에는 모택동의 부인 賀子珍과 江青도 있었다.
- 18) 여성들의 주요조직으로 하나는 각 급 공회중의 여공부(女工部)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여성연합회(全國女性聯合會)로서 이 조직들은 신 중국을 위해 많은 여성간부들을 배양했고 신중국이 성립된 후 여성운동을 고무하였다. (刘霞, “毛泽东妇女解放思想的基本内涵”, 附件党史月刊, 2006.8, 105쪽 참조.)

여 많은 권리를 가진 중국여성들은 중국의 정치·경제·군사·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1949년 9월 21일, 모택동은 중국정치협상회의제1기전체회의에서 “중국인민들은 일떠섰다”고 선언했다. 중국공민들을 일떠세워 신중국을 건설한 모택동의 공헌을 보자면 국내적으로 국방건설을 중요시한 것이고 국외적으로는 외부의 침략과 간섭에서 벗어나 감히 아메리카와 맞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라 할 때 지난세기에 제정되고 실시된 중국의 국적정책과 국적법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1.2 중국국적정책의 영향

청정부가 제정한 “대청국적조례”와 민국정부가 제정한 “중화민국국적법”은 모두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후 국민당이 전수했던 유럽자본주의 법체계를 폐지한 동시에 사법기관으로 부터 국민당시대에 배양했던 법학자(구법조인)들을 밀어 내고¹⁹⁾ 구소련의 법들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어²⁰⁾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되면서 중국의 여성해방운동과 남녀평등실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청정부는 1909년에 제정한 중국의 첫 성문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에서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으며 1912년에 손문(孫文)이 집권한 중화민국정부에서 제정하고 1929년에 장개석(蔣介石)이 집권한 남경국민정부에서 개정한 “중화민국국적법”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취하였다. 두부의 국적법은 제1조에서 다 같이 “출생 시 부가 중국인인 자”와 “태어날 때 부가 사망했을 경우 부가 사망 시 중국인인 자²¹⁾²²⁾”는 중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중국의 국적정책과 국적법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중국공산당은 1947년에 반포한 “중국토지법대강” 제6조²³⁾에서 “향촌의 모든 토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체 인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평균 분배한다.”고 규정하였고 1950년

19) 鈴木賢, “原苏联法制与法学对当前中国法之影响”, “俄罗斯法制与法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04.6, 58쪽.

20) 王志华, “苏联法影响中国法的几点思考”, 2008.1, 95쪽 참조.

21) “대청국적조례” 제1조: 一、生而父为中国人者; 生于父死以后, 而父死时为中国人者.

22) “중화민국국적법” 제1조: 一、生时父为中国人者. 二、生于父死后, 其父死时为中国人者.

23) 中华人民共和国土地法大纲第六条: -连同乡村中其他一切土地, 按乡村全部人口, 不分男女老幼, 统一平均分配.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토지개혁법” 제11조²⁴⁾에서는 “토지분배는…인구에 따라 통일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중국토지법대강”의 반포부터 남녀평등이 실시되었고 동시에 선천적인 국적취득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실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는 건국 후에 제정된 국적정책과 국적법에 이론적 기초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에는 소련의 법체계 외 소련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에 대한 이론도 많이 전해졌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출간된, 중국정부가 처음 창간한 여성간물인 “신 중국여성”은 소련여성들의 생활을 소개하였는데 주로는 소련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생산건설과 사회활동에 참가한 내용 외 남성들과 같이 사회의 존경을 받는 내용도 실었다. 스탈린이 쓴 글인 “노동여성을 논함”도 게재되었다.²⁵⁾ 중국의 중요한 매체들인 “홍기(紅旗)”·“인민일보(人民日報)”·“중국부녀(中國婦女)”·“중국부녀보(中國婦女報)”에서 중국 공산당이 진행한 성별정책에 대한 공개토론과 공고를 보자면 “부녀해방”·“사회주의혁명”·“사회주의건설” 등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된다.²⁶⁾

중국에서 실시된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연역을 돌이켜 보자면 1980년 유엔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수용²⁷⁾ 및 같은 해 9월에 있는 국적법의 제정에 앞서, 1947년에 반포된 “중국토지법대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49년 9월 29일에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 제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여성을 속박하는 봉건제도를 폐지한다. 여성들은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생활 여러 면에서 모두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남녀혼인자유를 실시한다.”²⁸⁾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골자로 하여 1954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86조²⁹⁾에는 여성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제96³⁰⁾조에는 여성들의 평등권에 관한

24) 中华人民共和国土地改革法第十一条: 分配土地, 以乡或等于乡的行政村为单位, 在原耕基础上, 按土地数量、质量及其位置远近, 用调剂调整方法按人口统一分配之。

25) 臧健, “苏联对中国性别平等的影响”, 妇女研究论丛, 2008.3, 73-74쪽 참조.

26) 钟雪萍, “妇女能顶半边天”, 南开学报, 2009.4, 59쪽 참조.

27) 중국은 1980.7.17.에 위 협약에 싸인을 했고 동년 11.4.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20/content_697358.htm>, 최종검색일: 2015.10.10.

28) “中华人民共和国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第六条: 中华人民共和国废除束缚妇女的封建制度. 妇女在政治的、经济的、文化教育的、社会的生活各方面, 均有与男子平等的权利. 实行男女婚姻自由.

29) “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八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年满十八岁的公民, 不分民族、种族、性别、职业、社会出身、宗教信仰、教育程度、财产状况、居住期限, 都有选举权和被选举权. 但是有精神病的人和依照法律被剥夺选举权和被选举权的人除外. 妇女有同男子平等的选举权和被选举权.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국적정책의 실시에서 보장으로 되었고 국적법의 제정에도 이론적 기초로 되었다. 1980년에 이르러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 제정되었다. 제4조에서 제정한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으로서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국적을 가진다.”는 규정은 중국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국적권에 법적인 보장으로 되었다.

동서냉전시기에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한 북한도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남녀평등을 실시했다. 선천적국적취득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은 전혀 다른 원칙을 취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얻자면 일제통치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고 또한 항일전쟁시기에 소련에서 생활한적 있는 김일성의 경력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북한국적법의 제정

2.1 김일성의 남녀평등사상

중국학자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김일성은 중국동북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항일부대를 조직하였고 마르크주의를 접수하였으며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김일성이 집권한 북한에서는 자국민의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북한의 모든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공민화를 실현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12년에 조선평안남도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일성은 1917년에는 아버지를 따라 중국길림성임강현(中國吉林省臨江縣)에 이주하였다. 1926년 초에는 길림육문중학(吉林毓文中學)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동안 조선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고 비밀독서회를 조직하였으며 마르크주의를 선전하고 청년혁명조직을 건립했다³¹⁾한다. 1932년 4월 25일에 길림성안도현명월구에서 안도현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다³²⁾는 기재가 있다.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에 대하여 동아시아 여러 나라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³³⁾를

30) “中华人民共和国宪法”第九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妇女在政治的、经济的、文化的、社会的和家庭的生活各方面享有同男子平等的权利。婚姻、家庭、母亲和儿童受国家的保护.

31) 何立波, “金日成在中国东北的战斗岁月”, 老年人, 2012.2, 38쪽.

32) 何立波, 위의 논문, 38쪽.

33) 한국의 성대 이명영(李命英)명예교수는 “항일투쟁” 흔적이 없다 - 중국공산당이 확인한 김일성의 역사날조”로 된 논문을 발표하였고(한국논단, 1996.2, 154쪽.) 일본의 호세이대(法政大)시모도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 교수는 “아시아 냉전사”중국과 소련에 충성했던 김일성~중국·소련위해 항일무장투쟁 했으나 조국 조선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학자 양소전(楊紹全)의 견해에 의하면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에서 항일을 하였고³⁴⁾ 김일성이 거느린 항일유격대의 여성들 중에는 김일성의 부인이고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0년에 중국에서 소련으로 철거했다가³⁵⁾ 1945년 9월에 소련군을 따라 다시 조선국내에 돌아간 김일성은 소련점령당국의 선정에 의해 신정권의 최고영도자로 되었다.³⁶⁾ 1946년 2월 8일에는 임시정부-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건립하고 위원장에 임³⁷⁾했으며 1948년 9월 9일에는 사회주의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고 공화국수상에 임하였다.

한국에는 김일성의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북한사회주의건설에 노동력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 외,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은 전 시대와 비교해서 놀랄 만큼 진전되었으며 당시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남녀평등 정책에 비해서도 혁신적이었다³⁸⁾는 평가 그리고 북한은 당과 국가기관을 건설하면서 토지개혁·노동법과 남녀평등 그리고 선거사업을 통해 북한사회를 재구성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였다.³⁹⁾는 평가가 있다.

2.2 북한국적법의 내용

김일성은 1936년에 발표한 “조선광복회10대강령”⁴⁰⁾에서 남녀평등을 구상했고 1946

위한 독립운동은 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논단, 2008.11, 178쪽.)

- 34) 김일성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항일군대에서 안도반일유격대대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3단장위,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6사장, 동북항일연군교도여남야영책임자(東北抗日聯軍教導旅南野營責任者) 등 직무를 담당하였고 오직 김일성이 거느린 부대가 조선에서 작전할 때만 조선인민혁명군칭호를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과 최용건 등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중국공산당에 참가하였고 중국공산당당원의 신분으로 중공만주성위에서 영도한 동북항일전쟁에 참가하였고 한다. 그는 또 김일성의 입당시간에 대해 두 가지 설을 내놓았는데 중공만주성위당안에 있는 “풍강(馮康)보고 1”(1935.12.20.)에는 “김일성, 고려인. 1932년 입당”으로 되어 있고 중공만주성위당안의 “동만특위서기 xxx이 성위에 보낸 편지(1935.3.3.)”에는 “제3단 장위 김일성(한인), 1933년 입당”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楊紹全, “中国共产党与朝鮮·韩国反日独立运动(1921-1945)”, 社会科学战线, 2011.6, 18-19쪽.)
- 35) 1940년 겨울, 주보중(周保中)과 이조린(李兆麟)등이 거느린 항일연군부대는 육속 소년경내에 철거하였다. 김일성이 거느린 제1로군경위여단의 약 백여명의 사람들도 소련에 진입하였다.(王学亮, “金日成为何到中国东北参加抗日战争”, 兰台内外, 2007.3, 16쪽. 참조)
- 36) 余伟民, “苏联与中朝关系(1945-1958)”, 冷战国际史研究, 2012.12, 5쪽.
- 37) 王学亮, “金日成为何到中国东北参加抗日战争”, 兰台内外, 2007.3, 16쪽.
- 38)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312쪽.
- 39) 박영자, 위의 논문, 298쪽.

년에 발표한 “여성동맹의 금후과업에 대하여”⁴¹⁾에서는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일전쟁에서 세운 여성들의 업적을 긍정해 주었다. 북한에서는 1946년에 남녀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인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반포하였고 1946년 7월 30일에는 여성차별을 없애는 법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반포하였다. 본 법령은 북한국적법의 제정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되는 기반으로 되었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1963년 10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 제2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법(북한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한반도의 3.8선 이북에서 제정된 첫 성문국적법이고 한반도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성문국적법이라 하겠다. 선천적국적취득에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한 북한국적법의 구체적인 규정과 내용들을 보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북한국민으로 되는 요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인 1963년 10월 9일까지 조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는 북한국적을 가지고 북한국민으로 될 수 있다.

둘째, 제4조의 규정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적을 취득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공민 간” 즉 부 또는 모가 북한공민인 경우, 그 자녀들은 북한국적을 가진다. 2항의 규정에 따르자면 북한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남성공민이든 여성공민이든 상관없이 북한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는 북한국적을 가진다.

40) 제7조: 양반, 상인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 없는 인륜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 할 것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128쪽.)

41)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주기 위하여서는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습을 철저히 없애야 하며 참다운 민주주의적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한 부분이며 나아가서는 더 높은 혁명단계의 과업수행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항일유격대의 여성대원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 여성들을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싸웠으며 이 투쟁에서 여성해방운동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과 완전히 평등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혁명임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206-207쪽.)

셋째, 제5조의 규정을 보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과 외국 공민 간에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남성공민이든 여성공민이든 상관없이 북한공민과 외국공민 간에 출생한 자는 부모쌍방의 합의에 의해 북한국적을 가질 수도, 외국국적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외, 제7조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결혼하여도 그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공민이든 여성공민이든 상관없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북한국적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국남성과 결혼한 북한여성들의 국적도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92년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6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본 규정에 의해 국적에 관한 사항은 북한헌법의 위임을 받은 북한국적법이 정한다하지만 북한국적법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실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2001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수용을 떠나, 1992년에 제정된 헌법의 위임과 1963년에 제정된 국적법에 앞서, 1946년 7월 30일에 제정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의 반포와 실시부터라 하겠다.

북한국적법은 “공화국의 공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과 1999년에 걸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95년에 개정된 북한국적법은 16조항으로서 1963년에 제정된 국적법에 비교해 볼 때 6개조가 증가된 셈이나 북한공민으로 되는 요건은 오히려 간소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63년에 제정된 북한국적법 제2조에서 규정한 북한공민으로 되는 요건은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본 법 공포일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이다. 개정국적법은 북한공민이 되는 요건을 “공화국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조선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로 개정하여 시간적인 요건이었던 “본 법 공포일까지”를 삭제시켰으나 부모·양계혈통주의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국제인권조약가운데 하나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3월 29일부터 이 협약이 북한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였다.⁴²⁾ 본 협약의 가입국으로 됨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에 비해보면 시간적으로

42) 김석향,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북한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으나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실시는 한국보다 일찍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III. 한국국적법에서의 남녀불평등

1. 자본주의 일본의 영향

1.1 이승만정권과 일제청산

1945년 8월 15일 일본천황은 전 세계에 포츠담공고를 수용함을 알렸고 1945년 9월 2일에는 미 전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인 항복이 진행됐다. 패전국인 일본은 연합군총사령 맥아더의 지휘에 따라야 했고 승전국인 한국도 미군정의 의사에 따른 시대상황과 동서냉전 그리고 6.25전쟁 등이 원인으로 되어 한국의 일제청산은 시작에서 끝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만은 1919년에 있는 3·1운동 직후부터 1925년까지 6년 동안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맡고 있었다.⁴³⁾ 장기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다가 1945년 10월 16일 한국에 도착⁴⁴⁾한 후 외교 독립 노선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⁴⁵⁾ 1948년 5월 31일에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제정 작업을 총지휘 해 그 임무를 완수했다.⁴⁶⁾ 이 헌법은 선진 각국의 헌법을 두루 참고로 한 바탕 위에⁴⁷⁾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임시정책 대강’ 제4조는 “일본이 한국에 실시하던 법률과 제도는 일체 폐기함”이고 제5조는 “적산 반역자의 재산은 공사

구학회, 2006, 26쪽 참조.

43) 유영익, 이승만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서울 163쪽.

44)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1953, 서울 69쪽 참조.

45) 귀국한 이승만은 재빠르게 국내 정치 기반을 구축한 다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난 1946.6. 부터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자신이 제창한 남한 과도정부 수립 안을 채택 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1947.3. 발표된 투루먼독트린을 계기로 소련과 본격적인 냉전에 돌입한 미국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자 1947.9. 드디어 이승만이 주장한 방침에 따라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소련과 합의한 5년간의 신탁통치안을 포기하고 유엔 결의에 따른 남한 단독정부 수립 안을 새 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유영익, 위의 책, 83쪽.)

46) 유영익, 앞의 책, 157쪽.

47) 영국과 미국의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 중화민국의 5권헌법(1905), 일본의 메이지헌법(1889)등을 참고로 했다. (유영익, 앞의 책, 224쪽.)

유를 물론하고 몰수 함”이라 정해져 있었다.⁴⁸⁾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던 한반도의 일제청산을 말하자면 재산청산 뿐만 아니라 인적청산도 말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일제청산은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이승만 내각에서 친일파로 의심받을 만한 인물들을 배제한 것으로 끝난 셈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남한에 널리 퍼져있음을 알게 되었고 히틀러가 물러간 동유럽국가에 소련이 통제하는 공산정권이 종전 몇 개월 사이에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⁴⁹⁾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당시 이승만의 초대내각에는 친일파가 없었다.⁵⁰⁾고 하지만 미국과 손잡고 시작한 건국사업에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들을 그대로 기용했고 미군정에 붙어 산 일제 강점시기의 법조인들을 그대로 중용하고 출세시킨 탓으로 한국에는 일부 법리의 구성과 전개가 일제강점시기에 형성된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⁵¹⁾는 주장들이 있다.

한국의 최초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였다. 공자의 유교사상의 영향도 있었겠으나 미국의 영향력과 지배 그리고 동서냉정의 시작으로 일본에 등을 돌릴 수 없었던 시대상황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에 대한 이해를 얻자면 미군정이 만들어 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도 필요하지만 일본국적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소견이다.

1.2 일본국적법의 검토

일본국적법의 연역을 보자면 1899년(明治32년)에 메이지국적법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고 1950년(소화25년)에는 현행 국적법의 제정이 있었으며 그 후로 1984년(소화59년)과

48) 유영익, 앞의 책, 234쪽 참조.

49) 허문도, “일본의 전통적 미·소·일을 극복한 ∞ 일본을 감싸고 한국”, 제43회 이승만포럼증거, 42-43쪽 참조.

50) 이승만은 초대 내각(대한민국 초대 행정부)을 구성하면서 대부분을 독립운동가들로 조각하였고 친일파로 의심 받을 만한 인물들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정부의 관료 중에는 일제시대에 공무원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군, 경찰, 법조, 토목 등 전문 분야에는 더 많은 전력자들이 채용되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미군정 청(치안국장: 조병옥, 수도청장: 장택상)에서 임용되었거니와 이승만 정부도 원활한 정부 운영을 위해 이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y25nzn&logNo=110180245351>>, 검색일: 2015.5.6.

51) 이상욱,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민법 제391조 - 일제 강점시기 민법학의 청산을 목적으로”, 민족문화논총 제36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7, 186쪽.

2008년(평성20년)에 거쳐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1899년에 제정된 메이지국적법은 한국의 최초국적법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야겠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비군사화를 목적으로 한 일본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연합군최고총사령맥아더의 5대개혁지령 중 첫 번째가 여성해방⁵²⁾이었는데 맥아더는 일본의 민주화실현을 위해 남성들의 반대도 마다하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⁵³⁾ 이는 일본역사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 하겠다. 이듬해 “맥아더초안”에 따라 제정된 일본헌법에는 민주화사상과 평등권이 체현되었으나 일본은 한동안 메이지국적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950년에 일본에서는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일본국민으로 되는 제1조의 규정을 보자면 “자의 출생 시 그 부(父)가 일본인인 경우”⁵⁴⁾이다. 다시 말하자면 적출인 경우, 일본인을 부로 하고 일본인을 모로 한 자는 물론, 일본인을 부로 하고 외국인을 모로 한 자도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일본인을 모로하고 외국인을 부로 한 비적출자(非嫡出子)는 물론, 적출자(嫡出子)도 일본국적을 가지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오끼나와에는 장기간의 미군 주둔으로 미국 남자와 일본 여성간의 국제결혼이 적지 않았다. 미국국적법상 미국인-외국인 부부의 해외 출생자는 친인 미국인이 10여년 이상 (그 중 5년은 14세 이후)미국 내에 거주실적이 있어야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인 부(夫)가 이 같은 미국 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의 해외출생자는 미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일본 국적법상 자(子)는 부(父)의 국적을 따라야 하므로 일본인 모(母)의 자(子)에게는 일본 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이런 부부의 자(子)는 무국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1974년 조사에 의하면 오끼나와에는 3,913명의 무국적자가 있었다.⁵⁵⁾고 한다.

1950년대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공자의 유교사상은 일본과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어 논의

52) “东亚三国的近现代史”共同编写委员会, 东亚三国的近现代史,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178쪽.

53) 구체적인 조치로는 첫째,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성분을 흡수하였고 둘째,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참정권을 승인하였다. 1946.4.10, 맥아더가 새로운 헌법초안을 제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새 선거법에 근거하여 전후 처음으로 되는 국회선거를 진행하였는데 선거권을 얻은 1,300여만 명의 여성들은 모두 자기의 선거권을 행사했다. 일본역사에서 처음으로 39명의 여성들이 의원으로 선거되었다(杰弗里·佩雷特, 美国的凯撒大帝麦克阿瑟, 京华出版社, 2004, 375, 381, 382쪽 참조.)

54) 子ハ出生ノ時其父カ日本人ナルトキハ之ヲ日本人トス.

55) 정인섭, “1991-92년 국적법개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93쪽. 金城清子、沖繩からの報告, 土井編, 国籍を考える, 時事通信社, 1984, 64-98쪽에서 재인용.

중의 사안들이 많았다. 예컨대 결혼한 여성들이 자기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본의 관례였다고 한다면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버리고 가정주부로 되는 것이 한국의 관습이었던 점이며,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일본국적법과 한국국적법은 다 같이 자국의 여성국민과 그 자녀들의 국적권에 침해를 주었던 점 등이다. 1981년 9월 3일, 일본은 UN에서 통과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체결국으로 되었다. 본 협약의 체결로 1984년에 개정되고 198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일본국적법은 한 세기 가깝게 실시해 온 부계혈통주의를 부정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위 협약에 가입하였음에도 부계혈통주의를 고수한 한국국적법에 직접적인 압으로 되었으나 한국국적법개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본은 1910년에 체결한 “한일합병”을 구실로 한반도인들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고 침략전쟁에 동원시켰다. 전쟁이 결속된 후, 강제연행을 시킨 재일조선인들에게 이중국적 혹은 국적선택권을 주어야 했으나 1952년 4월 28일부터는 “민사국국장통달”을 의거로 재일조선인들의 “일본국적”을 박탈했다. 그 때로부터 재일조선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국적의 운명에 면하게 되면서 일본국적법이 개정된 1984년까지 일본인을 모로, 재일조선인을 부로 한 자들은 일본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격식·내용 등 면에서 메이지국적법을 모태로 한 한국국적법은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들의 국적권을 박탈하여도, 일본국적법이 재일조선인들의 국적권에 침해를 주어도 발언권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국적법은 일본정부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국적권침해에 간접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겠다.

2 한국국적법의 문제점

2.1 한국국적법의 내용

한국헌법상 평등권원칙에 의하면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라면 누구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했지만 미군정이 제정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를 기본 골격으로, 일본의 메이지국적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반세기 가깝게 단일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하면서 평등권을 비롯

하여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1948년 5월 11일에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⁵⁶⁾가 제정되었고, 1948년 12월 20일에는 본 조례를 기본 골자로 하여 “대한민국국적법(한국국적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된 성문국적법으로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한국국민이 되는 요건을 보자면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이다. 그 결과, 부의 국적만이 기준으로 되어 한국인을 부로 하고 한국인을 모로한 자는 물론, 한국인을 부로하고 외국인 모을 모호한 자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었으나 한국인을 모로하고 외국인을 부로 한 자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의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父)의 국적만이 인정되어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비적출자는 물론, 적출자도 한국국적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귀화 절차를 거쳐야만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한국국민이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을 보자면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이다. 본 규정은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도 없었던 내용으로서 일본의 메이지국적법 제1조의 내용을 그대로 본 떠 온 것이라,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위배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규정이라 하겠다.

1948년에 제정된 한국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한국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 바로 한국국적법이다. 헌법의 위임을 받은 한국국적법이 자국민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권원칙을 위배하면서도 부계혈통주의를 선양한데는 한국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할 경우, 향후 국적제도가 한국의 자량으로 삼는 단일 민족 국가성을 침해하게 된다.⁵⁷⁾는 것이고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子)는 대부분 이중국적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⁵⁸⁾ 원인에서였다. 단일민족의 유지를 위하고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에서 나타나는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의 평등권 그리고 국제조약과 충돌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부계혈통주의를 선호한 한국국적법은 또 다른 문제들을 산생시켰다.

우선, 부(夫)중심주의적 조향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들의 독자적 국적선택

56)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4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

57) 노영돈, “1997년 국적법 개정안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34쪽 참조.

58) 정인섭, 앞의 논문, 93쪽.

권을 허락하지 않은 대신 부의 국적을 강요했다. 예컨대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남자는 자신이 원래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여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서 남편도 외국인인 사람은 남편과 함께 신청하지 않는 한, 혼자서는 한국에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⁵⁹⁾ 있었다.

다음,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에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⁶⁰⁾ 그러나 한국국적법은 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미성년 자녀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⁶¹⁾하게 되어 위 협약과 상충되었다.

그 다음, 주한 미군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한국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국적자들을 산생시켰다. 즉 한국인을 모로, 한국군사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을 부로 한 자는 한국국적도 미국국적도 가질 수 없고 무국적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

동서냉전의 결속으로 지난세기 90년대부터 세계는 글로벌시대로 진입했고 그 때로부터 한국국민의 범주는 한민족의 혈통을 벗어나 공법학상의 자격과 신분을 가진 국민들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고래로 한민족은 그 동질성을 유지하여 왔고 이를 모태로 하여 하나인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아⁶²⁾왔으며 또한 한반도는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일한 언어, 문화, 풍습, 역사를 계승해 온 단일민족국가로서 혈통(그 중에서도 특히 가부장적인 전통, 유교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부계 혈통)에 대한 집착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강한 편⁶³⁾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혈통을 가진 부가 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엄격한 단일국적을 선호했던 한국국적법은 부의 한국국적을 상실시켰다. 이때 모가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한국국민일지라도 부가 한국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한반도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 외국국적을, 한국국민이 아니라 외국국민으로 되었다. 반대로 외국남자가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처는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⁶⁴⁾ 자의 국적도 마찬가지였다. 귀화 신청하여 한국국적을 소유한 외국혈통을 가진 남성들의 자녀들은 출생과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5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법해설, 2007, 17쪽 참고

60) 석동현,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법조 494, 법조협회, 1997.11, 39쪽.

61) 법무부, 앞의 책, 107쪽.

62) 노영돈, 앞의 논문, 34쪽 참조.

63) 석동현,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저스티스, 32.2, 한국법학원, 1999.6, 154쪽.

64) 법무부, 앞의 책, 17쪽.

한국국민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반세기 동안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 취득의원칙으로 하면서 단일민족의 순혈주의를 선호하려했으나 글로벌 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이미 생물학적인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공법학상의 혈통주의에로 나가고 있었다.

지난세기, 남성혈통을 기준으로 하여 순혈주의를 유지해 오면서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한국국적법은 여러 차례 소폭의 개정이 있었으나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원칙만은 변함이 없었다. 그 탓으로 한국국적법은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거듭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국적에 국가성침해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2.2 한국국적법의 개정

1984년, 일본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에 뒤이어 국적법을 개정하였으나 한국은 한 동안 부계혈통주의를 그대로 유보했다.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유입 특히는 중국조선족들의 이민과 역이민을 초래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나아가서 한국의 새로운 사회질서는 한국국적법의 개정에 주되는 원인이었다고 하겠다.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한국국적법은 제정되면서부터 한국헌법의 평등권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이어 1980년대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발생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국적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가 집중된 사항은 당시 본격적인 교류가 진행되기 시작한 구공산권출신교포 특히는 중국조선족들의 국적처리문제가 제기⁶⁵⁾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1990년 말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한 바 있었다. 당시 개정위원회는 1991년 말까지 1년간 운영되었다. 여기에서의 토의를 바탕으로 법무

65) 당시까지 정부는 구 공산권출신 교포의 국내영주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강제 징용되었던 사할린 교포 1세만은 제한적으로 국내 영주귀국을 허용하였으며(1990년 말까지 65명 허가), 중국 교포 중에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에 한하여도 국가유공자 예외차원에서 영주귀국을 허용하였다(1990년 말까지 12명 허가), 외교부의 추천을 받은 영주 귀국자에 대하여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판정을 해주었고 이를 근거로 귀국자들은 호적을 정리하였다. 즉 별도의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는 밝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확인행위인 법무부의 국적판정 역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영주 귀국자가 소수에 그쳐 그러한 임시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법무부는 구 공산권 교포들의 출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법률조항이 마련되기를 원하였다. (정인섭, 앞의 논문, 100쪽.)

부가 개정안을 준비하여 1992년 4월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였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해인 1992년의 개정안은 끝내 햇볕을 보지 못하고 시산되었다.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였다. 내용 일부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정부 역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았다.⁶⁶⁾ 1991년 2월 22일, 법무부가 1991년에 국적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광복 이후 거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던 국적법에도 시대변화를 따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을 구현할 필요성이었다. 둘째, 국적관련 여러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던 미비점과 모순점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정비의 필요성이었다.⁶⁷⁾

1995년 말 국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새롭게 개정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후 1년 반 이상의 작업 끝에 현행 국적법의 기본이 된 1997년 개정안이 9월 13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해 역시 공교롭게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였다. 1997년 개정안의 핵심골자 역시 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이었다. 따라서 핵심쟁점에서는 5년 전의 개정안과 유사점이 많았다. 그러나 5년 전과 달리 1997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사회여론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⁶⁸⁾한다. 구체적인 개정이유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 중 각종 남녀 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 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 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면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법 제2조 제1항

66) 정인섭, 위의 논문, 86쪽.

67) 정인섭, 위의 논문, 87쪽.

68) 정인섭, 위의 논문, 86쪽.

제1호).

②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제2항).

③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현행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삭제).

④ 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 전까지, 20세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 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⑤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법 부칙 제8조).⁶⁹⁾

1997년 12월 13일에 법률 제5431호로 한국국적법이 전면개정 되었다. 개정국적법 제2조 제1항에는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이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이다. 1호의 개정으로 부계혈통주의는 부정되고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된 셈이나 한국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이른다. 왜냐하면 2호의 규정에는 아직도 헌법의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적법개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를 거쳐서야 이루어졌다. 지난세기, 선천적인 국적취득에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한국국적법에서 보여진 문제점은 남성우위 즉 여성차별이었으나 개정을 거친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것으로서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이룬 법이라 하겠다.

69) 한국국가법령정보센터, 1998년 국적법의 제·개정 이유(2015.7.25.).

IV. 나가는 말

지난세기에 제정된 남북한최초국적법에서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면서 거의 반세기 동안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한국국적법개정은 어딘가 늦어진 개정이라는 감도 있지만 헌법의 평등권과 남녀평등에 관련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개정이라 하겠다.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부터 한반도의 역사에는 여권사상과 여성해방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아가 근대화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는 개화사상 그리고 개화운동과 함께 여성개화론이 등장되었고 1898년 9월 1일에는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되었다.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동학사상의 영향으로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줄곧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1908년에 있는 뉴욕여성공인들의 투쟁으로 매년 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로 명명되면서 여성들의 인권보장은 국제성을 갖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여성과 관련 깊은 협약들이 많이 제정⁷⁰⁾ 되었으나 지난세기 중기에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었다.

동아시아의 국적법제정을 보자면 1899년에 일본에서, 1909년에 중국에서 제정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 될 때까지 한반도에는 성문국적법이 없었다. 1948년,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는 남계혈연을 중시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체현되었고 같은 해에 본 조례를 기본골격으로, 일본의 메이지국적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 한국국적법에도 부계혈통주의가 그대로 유보되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1984년 당시 한국국내에는 여권운동이 활발했었으나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한국국적법은 오랫동안 남녀불평등을 만들어 가면서 인권보장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었다.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47년부터 시작되었던 동서냉전은 1991년에 이르러 종결되었다. 동서냉전의 결속과 한국경제의 발전은 외국인들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한국에서는 국적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또 다시 제기되었으나 개정은 1997년에 이르러

7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에서 제정한 여성과 관련 깊은 협약으로는 1949년에 채택되어 2년 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협약, 1952년에 채택되어 2년 후에 발효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 1957년에 채택되어 다음해에 발효된 기혼여성의 국적협약, 1962년에 채택되어 2년 후에 발효된 혼인의 도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유형식,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법학회논문집 제47권 제2호(통권 제9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46쪽.).

서야 이루어 졌다. 드디어 한반도의 남과 북은 다 같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
적취득의원칙으로 하여 여성차별을 없애고 남녀평등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1953.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97.
- 《东亚三国的近现代史》共同编写委员会, 东亚三国的近现代史,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 杰弗里/佩雷特, 美国的凯撒大帝麦克阿瑟, 京华出版社, 2004.

2. 학술지

- 노영돈, “1997년 국적법 개정안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4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7, 29-53쪽.
- 정인섭, “1991-92년 국적법개정”,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85-111쪽.
- 석동현, “헌행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법조 494, 법조협회, 1997.11, 30-73쪽.
- 석동현, “신국적법의 성립경과 및 개정의 개요”, 저스티스 32.2, 한국법학원, 1999.6, 140-181쪽.
-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297-330쪽.
- 김석양,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담론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6, 25-51쪽.
- 이상욱,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민법 제391조 - 일제 강점시기 민법학의 청산을 목적으로”, 민족문화논업 제3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185-210쪽.
- 유형식,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재47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43-65쪽.
- 高放, “世界妇女解放运动的特点和规律”, 社会科学研究 2005.2, 16-20쪽.
- 彭华, “中国缠足史考辨”, 江苏科技大学学报 2013.3, 6-24쪽.

- 徐维群, “太平天国妇女政策与客家妇女”, 龙岩师专学报 1995.6, 54-53쪽.
- 杨威, “戊戌变法时期的女子教育”, 西江大学学报 1997.1, 15-19쪽.
- 姜昱子, “辛亥革命前夕的女权思潮”, 学术交流 2009.5, 184-186쪽.
- 陈文联, “近代中国男女平等思想的历史考察”, 衡阳思凡学院学报 2000.8, 94-100쪽.
- 何黎萍, “论中国近代女权思想的形成”, 中国人民大学学报 1997.3, 84-91쪽.
- 于彦君, “浅析“五四”运动时期的中国妇女解放运动“, 改革与开放 2009.7, 15-17쪽.
- 王志华, “苏联法影响中国法的几点思考”, 2008,1 南第一师范学报, 2007.6, 95-100쪽.
- 刘霞, “毛泽东妇女解放思想的基本内涵”, 附件党史月刊, 2006.8, 103-105쪽.
- 何立波, “金日成在中国东北的战斗岁月”, 老年人 2012.2, 38-39쪽.
- 杨绍全, “中国共产党与朝鲜·韩国反日独立运动(1921-1945)”, 社会科学战线 2011.6, 338-365쪽.

3. 세미나자료집

- 허문도, “한반도 분할 정책과 이승만의 선지자 의식”, 제43회 이승만포럼중계, 2014.
- 이명영, “‘항일투쟁’ 흔적이 없다 - 중국공산당이 확인한 김일성의 역사날조 -”, 한국논단, 2008.11.
- 鈴木賢, 原苏联法制与法学对当前中国法之影响, 《苏联法学对中国法学与法制的影响》学术研讨会, 《俄罗斯法制与法学》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2004.6.

4. 전자문헌

- <<http://blog.naver.com>>.
- <<http://blog.naver.com>>.
- <<http://blog.naver.com>>.

[Abstract]

Research on Gender Equality of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Yan, Hai-Yu

After the World War II,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ny declarations and agreements started to put up with the problems of abolish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men's human rights has begun to receive the attentio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differences of gender equality would be found when reviewing legislated North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This thesis made a review and comparison of gender equality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n the Last Century.

On the question of acquiring nationality by birth,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rinciple of patrilineal descent. Due to the patrilineal descent of Confucian ideas against South Korea's women's Nationality rights,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that violated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was criticized. It came into conflict with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0, and lost the conviction. Relatively speaking,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never conflicted with the convention. Then come to a conclusion: the base of North Korea's Nationality Law is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and South Korea's Nationality law's base is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In short, Nationality Law was legislated in South Korea in 1948. South Korea accede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1984. But, South Korea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until 1997. Though South Korea advocated democracy and the rule, and legislated and amended law relatively quick, adopting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and exercising inequality principle on gender for nearly half a century left regrets on its history. But, it made an important significance on upholding the equali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and gender.

However, there are some important significant amendments of SouthKorea's Nationality Law on the exercising of equality principle and gender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Key Words] South Korea' s Nationality Law, North Korea' s Nationality Law,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gender equality